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 결

사 건 2026고정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최유림(공판)  
판 결 선 고 2026. 4. 29.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C, D, E, F, G쇼핑 등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저작



권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I가 착용한 'J' 의류 사진들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및 전시하고, 'K'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L 사이트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I가 착용한 'J' 의류 사진들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및 전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서 첨부), 감정서 1부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



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연예인 I가 착용한 'J' 의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모델 I를 촬영한 광고용 사진인데, 운동복과 운동화가 잘 어울리도록 스타일링된 모델이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짓고 있고 그에 따라 촬영 각도와 구도, 빛의 방향과 양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황색 또는 하늘색 배경과 해당 브랜드의 깃발이 의상 또는 운동화와 어울리면서 브랜드 상표가 부각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전체적인 색감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기 위하여 모델의 포즈 및 여러 모델들의 위치를 설정하고 소품을 배치한 점, ③ 촬영자는 피사체에 대한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함으로써 동일한 모델을 촬영한 사진들 사이에서도 선명도와 색감 등의 차이를 통해 피사체의 이미지를 다르게 느끼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연예인 I가 착용한 'J' 의류 사진들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및 전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고 봄이 타당하다.

## 2.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고의라 함은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M라는 쇼핑몰에 입점한 J 브랜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사이트의 사진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사진들이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오신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진들은 유명 연예인인 I를 의류 및 운동화 광고 모델로 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오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묵시적인 이용허락이 있었다거나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저작권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나경 \_\_\_\_\_